[양식 제10호]

⑩제출인

성명

	1 11 -		_1															
	<u>호</u> (•	<u>인</u> 년	신	고 ^월	서 일)	*	신고서 작성 '영표(○)'로 :)법을	을 참고	<u>1</u> 하고	l, 선	택항목어	는
	구	분				<u></u> 남	 편(누	쿠)				0	가	내(:	처)			
①환인당사자 〈신고인〉	성명	ē	한글	*(성)		/ (명)				*(2	7)	/ (명)				@ LF 7JH		
		ਰੇ	<u></u>		/ (명)		٦	① 또는 서명	(2	성)	/ (명)				① 또는 사		3	
	본(한자)					전회	+			본((한자)		7	 전화				
		생연월	 클일															
	*주민]등록	 -번호							-								
	*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		
	*주소																	
		_ <u>'</u> - └ 성대																
2		<u></u> 등록			_													
부 . 모 ^		<u> </u>																
양		<u>' '</u> L 성 ^c																
양 부 모	주민				_					-								
J																		
등록기준지 3외국방식에 의한 혼인					 릱익자		T		 년	월		일						
	<u> </u>						⊥ 모의 성	• <u>t</u>	보으로 하는 협	_	- - 하영-			예□아	니유	П		
	<u> </u>		'						<u></u> 혈족사이에 해]아니요				
⑥기타사항																		
	성 명								⑩ 또는 서명	2	주민등	록번호				-		
⑦증	주 소																	
인		성 명	ļ		⑩ 또는 서명					주민등록번호 -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	
	남편	부	성명						◐ 또는 서명		₹	성명					① 또는 /	서명
®동 의자		모	성명						⑩ 또는 서명	· 견 l	주민등	등록번호				_		
	아내	부	성명						⑩ 또는 서명		\chi_{\chi}	성명					① 또는 /	 서명
		모	성명						◐ 또는 서명	_	주민등	등록번호				_		
⑨신.	고인 출	들석 o	- 卢부						1 남편(부)	Д		② 아내(*	처)					

주민등록번호

*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	인	구 동 향 조	<u>.</u> 사							
② 실제 결	혼 생활	시작일			년	월	일부터 동거			
⊕ 혼인종류	남편	①초혼 ②사별	후 재혼 ③	이혼 후 재혼	-	아내	①초혼 ②사별	후 재혼 ③	이혼 후 재혼	
@ 취조	남편	11학력 없음 21 =	초등학교	③ 중학교		아내	[] 학력 없음 [2] .	초등학교 [③ 중학교	
© 취존 졸업학교	(부)	4 고등학교 5 대	대학(교)	⑥ 대학원	이상	(처)	4 고등학교 5 I	대학(교) [⑥ 대학원 이상	
	남편 (부)	① 관리직	2 전문직	Z]			① 관리직	② 전문직		
		③ 사무직	4 서비스				③ 사무직	④ 서비스직		
❷ 직업		⑤ 판매직	⑥ 농림어역	업		아내	⑤ 판매직	⑥ 농림어업		
ed 역립		7 기능직	⑧ 장치·기	계 조작 및 조	C립	(처)	① 기능직	⑧ 장치·기계	조작 및 조립	
		⑨ 단순노무직	10 군인				⑨ 단순노무직	10 군인		
		⑪ 학생·가사·무직					⑪ 학생·가사·무직			

^{*}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<u>형법에 의하여 처벌</u>받을 수 있습니다. **눈표(*)로 표시한 자료**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^{*}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 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작 성 방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※①,②란 및 ⑤.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, 나머지 란(③,④,⑥,®)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.
- ②란: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③란: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:「민법」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.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⑤란 : 혼인당사자들이「민법」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[8촌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)]을 표시합니다.
- ⑥란: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(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)의 경우 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
 -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, 등록기준지
- ⑦란: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.
- ⑧란: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⑩란: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* <u>아래 사항은「통계법」제24조의2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</u>
- ②란: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.
- ⊕란: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④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- 라: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- ① 관리자: 정부, 기업,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, 지휘 및 조정(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)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: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(과학, 의료, 복지, 교육, 종교, 법률, 금융, 예술, 스포츠 등) ③ 사무종사자: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(행정, 경영, 보험, 감사, 상담 안내.통계 등)

- ① 서비스종사자 : 공공안전, 신변보호, 돌봄, 의료보조, 미용, 혼례 및 장례, 운송, 여가, 조리와 관련된 업무 ⑤ 판매종사자 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(인터넷, 상점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 홍보, 계산 정산 등
- ⑥ 농림·어업 숙련 종사자 : 작물의 재배·수확, 동물의 번식·사육, 산림의 경작·개발, 수생 동·식물 번식 및 양식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- 📵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 조립, 산업용 기계 장비조작, 운송장비의 운전 등

- 回 학생·가사·무직: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, 전업주부이거나,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

부 서 류

-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1.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혼인동의서[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,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]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(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 이 동의하는 경우만)
-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[조정,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].
- 4.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.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-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: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(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)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각 1부
-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: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「민법」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.본을 모의 성•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(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) 1부.
-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)
-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)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※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(소제기자)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